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 이 병 응
전 화 : 500-2380, 2384
쪽 수 : 4P
별첨자료 : 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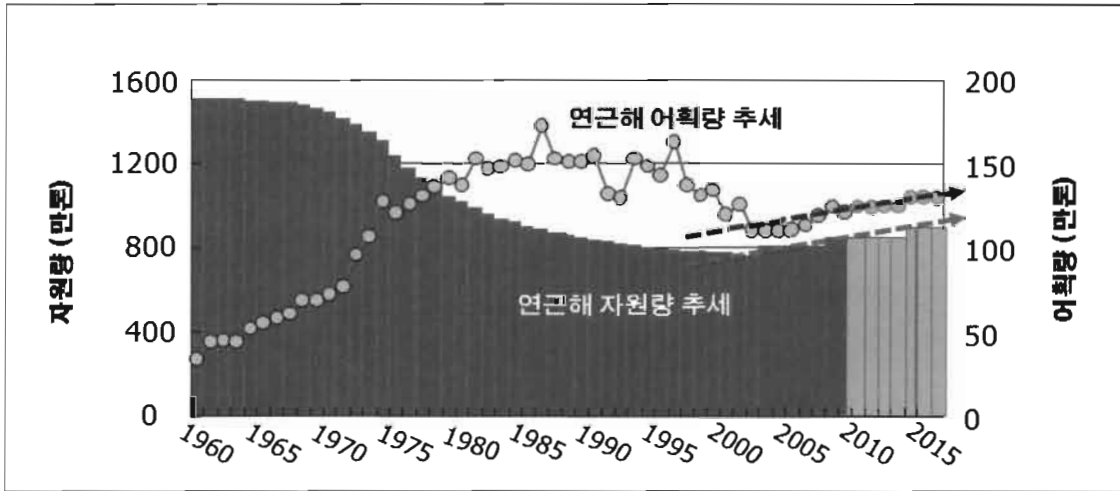
이 자료는 2011년 1월 20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

- 2015년까지 연근해어획량 150만톤을 목표로 수산자원관리정책 추진 -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0일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0년 4월23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5개년(2011~2015) 계획으로서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틀을 담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용역(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및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어업인단체, 관련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관리 심의·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에서 농식품부는 그간의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계속 감소하던 연근해 어획량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 앞으로 2015년까지 연근해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인 15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서는 현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수산자원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규제와 일률적인 지원 중심이었고, 규제와 지원 및 어업인 자율관리 등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하였던 것을 문제점으로 평가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연계성 강화, 지자체·어업인의 자원관리 기능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 구축
 - 조사전문 인력 및 장비 확충, 자원조사 내용 확대로 조사결과의 유용성 증대,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수산자원회복계획 정비 및 내실있는 자원조성사업 추진

- 자원회복계획은 특별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정밀자원 조사·평가를 거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관리방안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
- 바다목장, 바다숲 등 자원조성사업은 어초투입 등 H/W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기 시설된 바다목장, 바다숲의 사후관리 및 어촌관광, 수산물 브랜드화와 같은 수익사업 활용 등 S/W를 개선
 - * 조성된 자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기술지원과 함께 그 지역 자율관리공동체가 사후관리토록 책임을 부여

③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 개선

- 대상어종(현재 11개)은 점차 늘려가되 지역성이 강한 어종(제주 소라, 참홍어 등)은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관리이관
-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추가물량 요구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유보량 확대, 시·도간 전배 활성화, 차기년도 TAC 설정시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등 추진
- 장기적으로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 검토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등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강화

- 수산자원 보호 목적과 주민불편 해소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규제완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적 개선 추진

- 해양환경과 수산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노력 지속추진

⑤ 자율관리어업 체질개선

- 2015년까지 전체 어촌계의 60%인 1,200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현재 863개소)하되,
- 정부의존형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립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지원 강화
- 자원관리에 성공적인 선진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간 통합마케팅(브랜드화,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을 추진 하여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

□ 한편 1월 20일에 발표된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시·도로 통보되며, 시·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말(10~11월 경)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 하는 등 이번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요약)

<참고자료>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구 분	2007년 이후	현정부 이후	제1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자원량 어획량	('80) ('04) 1,000만톤 767 150만톤 108	('08) ('09) 818 831 128 123	('15)목표 1,000 150
정책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규제 중심 ◦ 자원관리 개념 도입기 ◦ 자율관리 도입('01) ('01)63개→('05)30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관리개념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 자율관리 양적확대 ('10) 863개 ◦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관리정책 체계화 - 조사·평가, 규제, 지원, 자율 관리간 연계성 강화 ◦ 지자체어업인 자원관리기능 강화
수산자원 조사평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량 중심의 단 순 자원량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전용선 도입 ◦ 생물학적 자료 기반의 자원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특성치를 반영한 과학적 자원평가 기법 개발 - 생존율, 사망계수, 평균체장, CPUE 등 종합 반영
수산자원 회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회복계획 사업 도입('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평가사업과 자원 관리사업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회복계획은 대상어종 정밀 자원평가 후 관리방안 추천 사업으로 체계화 ◦ 폐기물 수거등 관리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자원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어초 투입 중심 ◦ 시범바다목장 도입('98) ◦ 연안바다목장 도입('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바다목장 단계적 완료('12까지) ◦ 바다숲조성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초어장, 바다목장 바다숲 사 후관리 및 자원활용 방안 강조 ◦ 생태체험관, 낚시관광 등 활용 ◦ 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가 사후 관리
T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제도 도입('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확대(11개 어종) ◦ 중앙정부 일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이 강한 어종은 지자체로 관리이관 추진(제주소라, 참홍어) ◦ ITQ 도입방안 검토
수산자원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지정('75) - 육지부 1,263km² - 해수면 2,640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재조정('08~'10) - 육지부 863km² 해제 - 존치지역 400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보구역 제도개선 추진(수산 자원관리법 개정 추진) - 주민불편해소 등 규제완화 수요와 수산자원보호 필요성 모두 고려
자율관리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도입('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확대 (('01)63 → ('10)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개선 - 연합마켓팅(직거래)·브랜드화 등 소득증대와 연결 - 자립능력 확대를 위한 교육강화: 지원일몰제, 교육바우처제, 신 규 우수공동체 자매결연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년) 요약

1 수산자원량 · 어획량

구 분	'80	'04	'08	'09	'10(P)
자 원 량	1,000만톤	767	818	831	830
연근해어획량	150만톤	108	128	123	120

* 그간 자원관리정책 성과로 '04년 이후 자원량 · 어획량 증가추세

* '10년의 경우 저수온현상으로 자원량 ·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

2 현재 수산자원관리 정책(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 ① 자원회복계획 : 정밀자원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규제방식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 · 평가 결과를 기초로 규제 · 보조 · 자율관리
- ② 어업규제(기술적규제) : 어구 · 어법규제, 허가면허제, 금지체장 · 금어기 등
- ③ 총량규제(TAC : 총허용어획량), 환경규제(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수면, 보호수면지정 등)
- ④ 정부지원 : 자원조성사업(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종묘방류) 어업인소득지원(융자, 보조 등)
- ⑤ 자율관리 : 어촌계 단위 자율적 금어기 · 금지체장 설정, 어장환경관리

《연차별 투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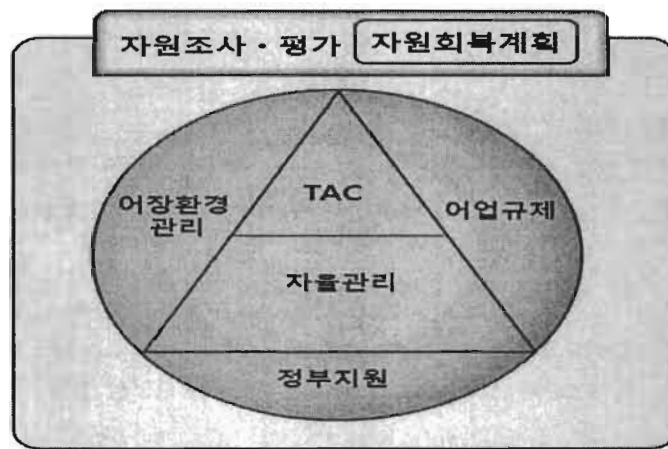
구 분	'08년	'09년	'10년
과학적 조사 평가	1,900	1,800	1,800
수산자원회복	1,300	1,840	2,190
TAC	15,915	13,519	13,610
시범 바다목장	13,200	13,000	17,917
연안 바다목장	9,600	12,000	17,000
바다숲	-	10,000	15,000
인공어초	38,480	40,010	38,567
종묘방류	12,068	17,045	17,179
자율관리	16,180	24,940	25,788

3 현 정책의 문제점

- 규제-지원-자율관리간 연계성 미흡 : 정책 간 시너지 효과 부족
- 정부의 규제·지원중심 - 자율적참여의식 부족, 관리비용 소요
- 자원변동에 대한 자원관리수단 다양화 부족(해양환경-수산 이원화)

4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정책 방향

- 자원관리 정책 체계화, 연계성 강화



- 마을어장 자원관리는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토록 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 주요 연·근해 어종은 TAC로 관리
 - 자원량 감소가 심한 어종의 경우 자원회복대상으로 별도 조사·평가
 - 정부 자원조성사업·어업인 소득지원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율관리 공동체, TAC 참여 어업인에 우선 실시
- 지자체·어업인의 자원관리기능 강화 추진
 - TAC 대상 어종중 지역성이 강한 어종(제주소라, 참홍어)은 관리 기능 지자체 이관
 - 어촌계별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 양적확대(전체 어촌계의 50%이상), 질적개선(소득 증대를 위한 연합마케팅, 직거래브랜드화)
 - 자원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정책 강화
 - 어장환경개선사업(침적폐기물수거, 폐어구 수거, 양식장 저질개선 등)

5 제1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목표

《정책지표》

과학적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고갈자원의
회복과 지속적 수산자원량 수준 유지

2015년 목표
연근해 수산자원량
1,000만톤, 어획량 150만톤



중점과제

1.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의 활용
2. 자원이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유지
3. 어종별 TAC 제도 강화 및 활성화
4.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관리의 실효성 유지
5. 자율관리어업의 선진화



추진전략

1. 수산자원 조사·평가 역량집중과 지자체 등과 공조협력 강화
2. 자원이회복 어종 확대와 자원효과 중심의 정책 연계성 강화
3. 한국형 TAC 제도 정착과 할당어업으로 발전 기반 구축
4. 서식지 및 생태환경 제도 실효성과 기존 제도 분석 및 보완
5. 자율관리어업 선진화를 통한 연근해 자원관리 거버넌스 유도

6 세부추진과제

1. 수산자원 과학적 조사평가체계 구축

정 책 지 표	성과전망	2010	2015
	전문 수산자원조사 인력(명)	25	40
	연안자원조사용 전용 어구 개발 (틀)	-	10
	주기적 자원평가 대상어종(종)	35	40
	수산자원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	1
	자원조사전용선(2차선) 확보(척)	1	2

- ① 조사전문인력 부족 ⇒ 전문인력 확충 : ('10) 25 →('15) 40, 대형 조사선(900톤) 확보 : 1척 →2척
- 수산과학원 기존인력 + 수산자원사업단 인력 활용
 - 조사선 신규 1척 확보를 노력하되, 예산확보 전까지 기존 소형 연구선 활용
- ② 조사자료의 유용성 미흡 ⇒ 생태특성치별 조사내용 구체화
- (현재) 어획량으로 자원량 추정 ⇒ (개선) 생존율, 사망계수, 평균체장, CPUE(단위노력당 어획량)등 생태특성치 종합 반영
- ③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개를 통해 어업인들과 정보교류
- 실제 현장 정보 반영, 주기적 update, 현실감 있는 자원평가체계 구축
 - * 현재 수협 어업정보시스템으로 운영 중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 과학적 체계적 자원조사평가체계 구축	계	37,350	1,800	2,630	10,270	12,380	10,270
	국 비	37,350	1,800	2,630	10,270	12,380	10,270
①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계	소 계	9,000	1,800	1,800	2,800	2,800	2,800
	국 비	9,000	1,800	1,800	2,800	2,800	2,800
② 생태특성치 개발시스템 구축	소 계	3,500		500	1,000	1,000	1,000
	국 비	3,500		500	1,000	1,000	1,000
③ 수산자원조사전용선(2차선)확보	소 계	21,850		330	6,470	8,580	6,470
	국 비	21,850		330	6,470	8,850	6,470

* 자원조사전용선 운영 및 관리비는 제외

2. 수산자원회복계획 및 자원조성사업

정 책 지 표	성 과 전 망	2010	2015
	연근해 수산자원량(만톤)	831('09)	1,000
	연근해 어획량(만톤)	123('09)	150
	자원회복계획 대상어종(종)	12	20
	투입노력(척)당 어획량(톤)	22	28
	바다목장 특화 사업(누계/개소)	22 (시범 5, 연안 22)	60 (시범 5, 연안 55)

① 자원회복계획 사업 성격 모호 ⇒ 자원회복 계획과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화

- (현행)수산과학원에서 선정한 어종에 대해 자원량 서식환경 등 매년 조사 후 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관리 방안 추천,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등 실시

* 조사평가와 자원관리사업이 혼재

- (개선)전체 자원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한 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은 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정밀조사 실시, 과학위원회에서 관리방안(TAC, 자율관리, 기술적 규제) 추천

* 특별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 : 남획 등으로 고갈 우려가 있는 대중어종, 종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어종 등

* 회복계획은 정밀조사·평가 및 관리방안 추천 기능으로 정립, 자원관리 사업은 어장환경개선사업과 통합 추진

② 어초투입 등 물량위주 자원조성사업⇒사후관리 및 자원활용 기능 강화

- 어초시설 등 h/w 투자는 최소화 하고, 기 시설된 바다목장, 바다숲이 지속관리 되도록 자율관리공동체에 책임부여
- 바다목장은 자원조성·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어초관광, 낚시, 생태 체험, 수산물브랜드화 등 조성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활용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 수산자원회복계획	계	715,062	125,200	151,637	147,907	145,159	145,159
	국 비	548,598	98,673	119,768	127,877	106,140	106,140
	지방비	166,464	26,527	31,869	40,030	39,019	39,019
	융자						
	자담						
①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소 계	10,405	2,081	2,081	2,081	2,081	2,081
	국 비	10,405	2,081	2,081	2,081	2,081	2,081
	지방비						
	융자						
	자담						
② 시범 바다목장	소 계	56,500	17,417	20,000	19,083	0	0
	국 비	56,500	17,417	20,000	19,083	0	0
	지방비						
	융자						
	자담						
③ 연안 바다목장(지자체)	소 계	134,000	17,000	17,000	20,000	40,000	40,000
	국 비	67,000	8,500	8,500	10,000	20,000	20,000
	지방비	67,000	8,500	8,500	10,000	20,000	20,000
	융자						
	자담						
④ 바다숲조성	소 계	88,000	13,000	15,000	20,000	20,000	20,000
	국 비	88,000	13,000	15,000	20,000	20,000	20,000
	지방비						
	융자						
	자담						
⑤ 인공어초시설(지자체)	소 계	283,830	46,839	58,975	59,926	59,045	59,045
	국 비	227,064	37,471	47,180	47,941	47,236	47,236
	지방비	56,766	9,368	11,795	11,985	11,809	11,809
	융자						
	자담						
⑥ 종묘매입방류(지자체)	소 계	142,327	28,863	38,581	26,817	24,033	24,033
	국 비	99,629	20,204	27,007	18,772	16,823	16,823
	지방비	42,698	8,659	11,574	8,045	7,210	7,210
	융자						
	자담						

3.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정 책 지 표	성 과 전 망	2010	2015
	TAC 대상어종(종)	11	13
	연근해 TAC 설정량(천톤)	417	500
	ITQ(시범사업) 대상어종(종)	-	1
	수산자원조사원(명, 승선 조사원 포함)	70	130

- ① 중앙정부 일률적 규제중심 ⇒ 지역성이 강한 어종은 지자체로 관리이관
 - 제주소라는 '11년부터 제주도에서 관리, 참홍어(신안)는 '11년중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관
 - * 지자체로 이관하더라도 자원평가 등은 수산과학원에서 기술지원
- ② 일부어종(홍어, 꽃게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총허용어획량 추가 물량 배정 요구 ⇒ 배정방법 개선
 - 정부 유보량을 활용, 실적에 따라 어획노력량 조절 유도
 - 남는 시·도 → 부족 시·도로 전배제도 활성화
 - 차기년도 TAC 설정 시 사전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 ③ 중·장기적으로 TAC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 방안 등 정책연구용역 추진

《연차별 투용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 총허용어획량(TAC)	계	68,961	12,422	13,264	14,012	14,260	15,503
	국 비	13,150	1,735	1,983	2,731	2,979	3,722
	융자	55,811	10,687	11,281	11,281	11,281	11,281
① TAC 제도 운영	소 계	11,650	1,735	1,983	2,231	2,479	3,222
	국 비	11,650	1,735	1,983	2,231	2,479	3,222
②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소 계	55,811	10,687	11,281	11,281	11,281	11,281
	융 자	55,811	10,687	11,281	11,281	11,281	11,281
③ 한·중·일협력기구	소 계	1,500			500	500	500
	국 비	1,500			500	500	500

4.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정 책 지 표	성 과 전 망		2010	2015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효적 개선(개선 건수)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완화) (개소/ha)		10/2,903	3/310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 (백만원)		2,810	2,883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백만원)		7,500	7,500
	수산자원보호·관리수면 대상어장 확대(개소/ha)		47/5,614	59/6,878

-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제도의 실효적 개선 추진
 - (현행)자연환경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 등과 중첩규제로 실효성에 문제
 - (개선)'11년중 수산자원보호 목적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규제완화 등 법령 개정 추진
- ② 친환경 어구 보급(생분해성),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현 수준이 지속유지 되도록 예산 확보 노력
- ③ 인공어초 투입어장,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지 관리·보호수면 지정 지속 확대
- ④ 해양환경-수산 일원화를 위한 공감대 확보 노력 지속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우남 의원 발의) 논의에 적극 대응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계	83,711	17,035	16,669	16,669	16,669	16,669
	국 비	76,967	15,635	15,333	15,333	15,333	15,333
	지방비	6,744	1,400	1,336	1,336	1,336	1,336
① 친환경 어구보급지원 (생분해성어구지원사업)	소 계	20,811	4,335	4,119	4,119	4,119	4,119
	국 비	14,567	3,035	2,883	2,883	2,883	2,883
	지방비	6,244	1,300	1,236	1,236	1,236	1,236
② 연근해 어장환경개선 사업	소 계	61,900	12,500	12,350	12,350	12,350	12,350
	국 비	61,900	12,500	12,350	12,350	12,350	12,350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사업	소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500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500	100	100	100	100	100

5. 자율관리어업 체질개선

정 책 지 표	성 과 전 망	2010	2015
	참여 공동체 지속 확대(개소)	863	1,200
	기업형 공동체 육성(개소)	-	25
	우수-신규공동체 자매결연(개소)	32	200
	공동체활성화 국내외 연수(회/년)	2	2
	교육, 워크숍 및 전국대회(회/년)	2	5
	자율관리 유형 TAC 추진(종)	-	2(시범실시)

- ① 자원관리 목적의 양적확대만 치중 ⇒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질적개선
- (현행)양적확대로 자원관리에 기여 : ('01)63개 →('05)308 →('10)863
 - * 자발적 자원관리(희생)에 참여한 만큼의 소득증대효과 부족에 대한 불만 표출
 - (개선)자율관리 공동체간 연합마케팅(브랜드화,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② 정부지원 의존, 자립의지 미약 ⇒ 교육 확대로 자립능력 강화
- (현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교육(수산회 컨설팅, 지자체 현장컨설팅)
 - (개선)지원 일몰제(4회/6억이상 지원조직 지원제외), 교육바우처제 (원하는 교육기관자체선정, 수강 후 교육비지원), 신규-우수 공동체 자매결연(Know-how 전수)

《연차별 투용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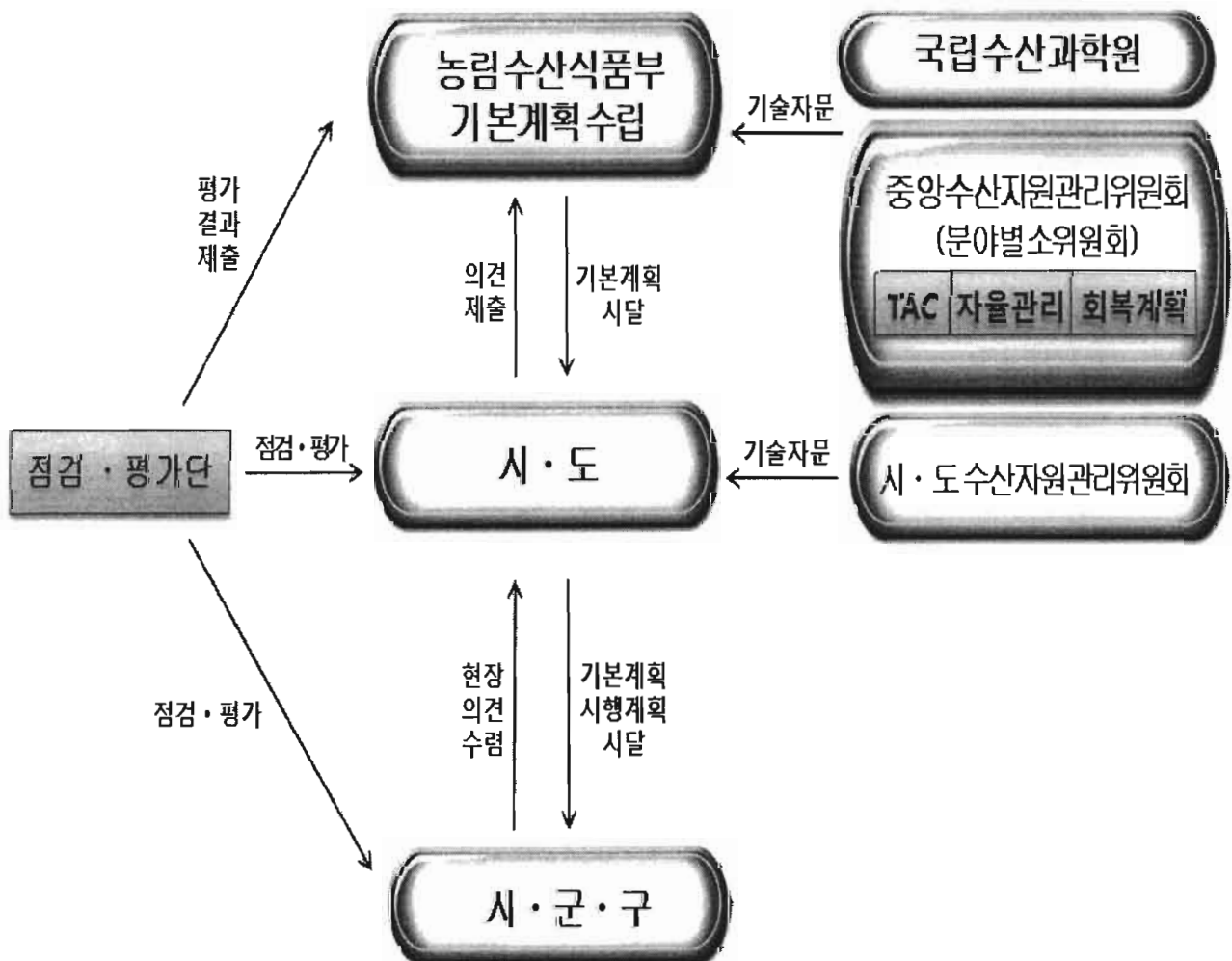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계	83,711	17,035	16,669	16,669	16,669	16,669
	국 비	76,967	15,635	15,333	15,333	15,333	15,333
	지방비	6,744	1,400	1,336	1,336	1,336	1,336
① 친환경 어구보급지원 (생분해성어구지원사업)	소 계	20,811	4,335	4,119	4,119	4,119	4,119
	국 비	14,567	3,035	2,883	2,883	2,883	2,883
	지방비	6,244	1,300	1,236	1,236	1,236	1,236
② 연근해 어장환경개선 사업	소 계	61,900	12,500	12,350	12,350	12,350	12,350
	국 비	61,900	12,500	12,350	12,350	12,350	12,350
	지방비	-	-	-	-	-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사업	소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500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500	100	100	100	100	100

7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1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중앙, 시·도)(2月말)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환류체계 마련
 - 매년 말(10~11月경) 외부전문가 참여 점검·평가단 구성
 -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 우수 시·도 관계자 표창,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체계》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2011년~2015년(5년간)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필요
- 종합적·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 종합적·체계적 자원관리계획을 위해서는 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과 수단의 개발 및 적용
 - 기본계획을 통하여 각종 정책과 수단이 시간적·공간적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행되는 관리체계 구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계의 구축
 - 고갈상태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회복계획
 - 수산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TAC)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
 -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붙임2

주요 어종별 자원량 어획량

(단위 : 톤)

어 종	2009년도 어획량(톤)	자원 상태	
		자원수준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톤)
가오리류	2,593	낮은수준	-
가자미류	19,687	감소경향	-
갈 치	85,450	변동경향	-
강달이류	12,074	낮은수준	-
갯 장 어	1,650	극히낮음	-
고 등 어	175,329	중위평형	148,000~169,000
꿩 치	3,550	변동경향	-
눈 볼 대	3,454	낮은수준	-
대구(대구류)	6,870	변동경향	-
도 루 목	3,939	저위평형	1,000~1,600
말쥐치(쥐치류)	8,280	극히낮음	-
멸 치	203,728	고위평형	-
명 태	1	극히낮음	-
민 어	4,770	감소경향	-
병 어 류	5,959	변동경향	-
보 구 치	682	극히낮음	-
부 세	148	극히낮음	-
붕 장 어	13,507	변동경향	-
삼치(삼치류)	36,793	안정상태	-
아귀류(아귀)	14,961	증가경향	-
옥 돔 류	1,215	감소경향	-
전 갱 이	22,087	중위평형	18,000~21,000
정 어 리	47	극히낮음	-
참 돔	1,864	감소경향	-
참 조 기	34,033	증가경향	-
참홍어(홍어류)	3,254	저위평형	-
청 어	37,514	변동경향	-
꽃 게	31,302	변동경향	10,000
대 게	2,372	고위증가	1,000~1,300
대 하	219	극히낮음	-
붉은대게	29,993	중위증가	29,000~31,000
개 조 개	1,918	저위감소	1,600~2,100
소 라	2,534	중위감소	790~1,500
키 조 개	7,368	저위평형	2,300~2,700
오징어류	189,160	고위평형	114,800~180,000

* 현재 이용가능 정보수준을 이용하여 자원수준을 분석

붙임3

자원관리어종(회복어종 및 TAC어종)생산량

□ 연근해 어업생산량

(단위 : 톤)

어종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비고
합계	522,109	578,652	521,889	496,977	548,406	602,745	658,462	561,320	
소계	94,390	107,615	104,538	121,050	144,879	143,102	163,017	125,513	
낙지	7,248	7,023	7,658	7,397	8,625	7,879	7,013	7,549	
오분자기	21	19	66	54	62	102	34	51	
참조기	7,098	17,570	15,272	21,428	34,221	33,199	34,033	23,260	
대구	1,826	2,641	4,272	6,810	7,533	5,399	6,870	5,050	
가자미류	13,107	12,038	15,319	19,879	24,340	20,274	19,687	17,806	
말쥐치	1,429	1,267	1,055	1,071	2,998	2,631	8,280	2,676	
갯장어	800	766	810	672	1,071	1,306	1,650	1,011	
갈치	62,861	66,291	60,086	63,739	66,029	72,312	85,450	68,110	
소계	14,308	10,794	12,904	13,332	21,172	23,638	37,559	19,101	
도루묵	1,928	2,472	2,401	2,647	3,769	2,720	3,939	2,839	
꽃게	9,478	2,683	3,714	6,894	13,606	17,846	31,302	12,218	
참홍어	222	259	255	392	375	400	400	329	
개조개	2,680	5,380	6,534	3,399	3,422	2,672	1,918	3,715	
소계	413,411	460,243	404,447	362,595	382,355	436,005	457,886	416,706	
고등어	122,044	184,274	135,596	101,427	143,776	187,240	203,410	153,967	
전갱이	20,454	25,513	42,608	23,227	19,089	22,748	22,087	25,104	
붉은대게	19,262	23,113	21,926	23,890	25,388	28,293	29,955	24,547	
키조개	2,443	2,471	3,453	5,409	7,897	5,489	7,368	4,933	
제주소라	14,065	9,507	8,498	7,496	6,909	3,056	3,534	7,581	
대게	1,889	2,605	3,240	4,062	4,817	3,019	2,372	3,143	
오징어	233,254	212,760	189,126	197,084	174,479	186,160	189,160	197,432	

※ 표시구분 : 자원회복어종 자원회복어종+TAC대상어종(중복) TAC대상어종

□ 자원회복 및 TAC 대상어종 연도별 증감률

대상어종	2004년	증감률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합계	578,652	10.8	521,889	-9.8	496,977	-4.8	548,406	10.3
자원회복	107,615	14.0	104,538	-2.9	121,050	15.8	144,879	19.7
자원회복+TAC	10,794	-24.6	12,904	19.5	13,332	3.3	21,172	58.8
TAC	460,243	11.3	404,447	-12.1	362,595	-10.3	382,355	5.4

대상어종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2010년(전망) 3개년('07-'09)대비	증감률	2010년(전망) 전년('09)대비	증감률
합계	602,745	9.9	658,462	9.2	572,173	-13.1	539,214	-18.1
자원회복	143,102	-1.2	163,017	13.9	157,415	-3.4	171,994	5.5
자원회복+TAC	23,638	11.6	37,559	58.9	38,574	2.7	40,322	7.4
TAC	436,005	14.0	457,886	5.0	367,184	-19.8	326,898	-28.6

붙임4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현황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2011년도		2010년도		2010/2011 TAC 대비
			ABC	TAC	ABC	TAC	
계	11종			425,320 (39,320)		417,300 (36,000)	증 8,020 (증 3,320)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60,000	160,000 (10,000)	169,000	169,000 (7,000)	감 9,000 (증 3,000)
전 갱 이	대형선망	근해	21,000	21,000	21,000	20,000 (1,000)	증 1,000 (감 1,000)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32,000	32,000 (1,000)	31,000	31,000 (1,000)	증 1,000 (-)
대 계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620	1,620 (120)	1,300	1,300	증 320 (120)
개 조 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연근해	2,400	2,400	2,100	2,100	증 300
키 조 개	잠수기	인천·경기·충남·전북 연근해	2,700	2,700	2,700	2,700	-
꽃 계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13,200	13,200 (1,200)	10,000	8,000	증 5,200 (증 1,200)
오 징 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연근해	188,100	188,100 (27,000)	180,000	180,000 (27,000)	증 8,100 (-)
도 루 목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동해 연근해	1,500	1,500	1,600	1,500	-
참 흥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특정해역, 흑산도근해	230	230	200	200	증 30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2,570	2,570	1,500	1,500	증 1,070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한치 제외)

②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관리할 유보량임

③ 제주소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대상 어종(물량)임

* TAC 설정기간 : '11.1.1~'11.12.31(다만, 대게 '10.11.1~'11.12.31, 제주소라 '10.9.1~'11.12.31)

붙임5

바다목장 조성 현황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구분		합계	'06	'07	'08	'09	'10	'11
물량	계	21개소	4	7	9	12	17(완공:4)	21(완공:3)
	신규		4	3	2	3	5	4
	계속			4	7	9	12	17
시설지역			강릉,군산, 거제,제주	보령,직도, 사천	연평, 속초,	기장,신안, 강정	태안,서천, 진도,영덕, 울산	강진,여수 경주,거제
사업비	계	670억	40억	80억	90억	120억	170억	170억
	국비	335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5억
	지방비	335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5억

□ 시범 바다목장

연도별 / 해역별	합계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총사업비	1,589	240	307	355	337	350
사업기간	'98~'12	'98~'06	'01~'10	'02~'12	'02~'12	'02~'12
'09까지 투자(억원)	854	249	275	124	90	116
'10년 예산(억원)	180	완료	33	55	47	45
'11년 예산	174	-	-	108	33	33
목장유형(면적)	248km ²	어업형 (20km ²)	다도해형 (110km ²)	관광형 (20km ²)	갯벌형 (75km ²)	체험·관광형 (23km ²)

붙임6

바다숲 및 인공어초 조성 현황

□ 바다숲 조성 현황(2009부터 35천ha를 대상으로 시설)

(단위 : 억원/천ha)

총사업비	조성대상	2009	2010	2011	비 고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3,110	35천ha	100억 원 (121ha)	150억 원 (250ha)	129억 원 (651ha)	5, 10, 12개소

□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 ha)

시도	적지(A)	시설현황						진척율(%) B/A
		합계(B)	'05까지	'06	'07	'08	'09	
합계	306,751	206,500	188,028	5,450	4,698	3,965	4,359	67.3
부산	2,704	2,658	2,314	88	88	72	96	98.3
인천	20,276	10,551	9,291	328	244	196	492	52.0
울산	2,546	2,370	2,116	64	56	74	60	93.1
경기	7,598	4,681	3,556	192	193	352	388	61.6
강원	27,791	23,084	22,160	240	230	250	204	83.1
충남	30,746	17,347	15,739	516	528	-	564	56.4
전북	15,772	14,365	10,857	1,142	1,022	848	496	91.1
전남	55,973	42,673	39,249	896	868	829	831	76.2
경북	27,360	23,128	22,556	104	172	164	132	84.5
경남	51,220	35,886	34,670	516	268	268	164	70.1
제주	64,765	29,757	25,520	1,364	1,029	912	932	45.9

붙임7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현황 (2009. 12월말)

(단위 : km²)

구분	계	해수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지정	4,239	3,903	1,263	2,640	336
조정	924	924	863	61	-
존치	3,315	2,979	400	2,579	336

○ 해수면

구분	시군	육지부(㎡)		해역부(㎡)		고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계		1,263,146,303	400,384,555	2,640,374,702	2,579,624,811	
조정완료	무안군	49,954,143	19,391,109	48,450,000	48,4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영광군	32,870,960	14,097,464	76,950,000	76,9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장흥군	5,528,000	2,902,401	85,070,000	85,070,000	농식품부-91('08.10.23) 농식품부-146('08.12.30)
	고흥군	257,679,569	69,644,336	334,870,000	334,870,000	농식품부-90('08.10.22) 농식품부-146('08.12.30)
	마산시	31,342,000	11,106,304	93,850,000	93,8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거제시	134,933,000	40,200,357	153,059,000	153,059,000	농식품부-105('08.11.24)
	사천시	21,279,238	9,826,410	43,650,000	43,650,000	농식품부-123('08.12.30)
	고성군	71,181,379	24,619,277	141,648,250	141,648,250	농식품부-140('08.12.30)
	홍성군	35,882,000	313,000	29,388,000	29,238,000	농식품부-149('08.12.30)
	남해군	54,516,600	3,353,584	198,695,000	198,605,564	농식품부-138('08.12.30)
	완도군	155,995,840	37,831,204	236,912,000	218,899,021	농식품부-141('08.12.30)
	해남군	74,520,000	20,812,760	31,580,000	28,384,100	농식품부-142('08.12.30)
	강진군	52,296,026	21,343,942	61,724,000	54,589,981	농식품부-143('08.12.30)
	함평군	36,759,548	11,904,000	33,318,452	33,318,452	농식품부-145('08.12.30)
	여수시	122,540,000	39,890,893	396,848,000	372,548,000	농식품부-144('08.12.30)
	하동군	7,042,000	1,056,184	9,981,000	9,981,000	농식품부-139('08.12.30)
	통영시	69,579,000	24,189,524	455,448,000	452,629,000	농식품부-139('09.7.23)
보성군	3,170,000	1,824,806	80,120,000	75,071,443	농식품부-441('09.12.18)	
조정예정	순천시	160,000	160,000	27,400,000	27,400,000	농식품부-139('08.12.30)
	태안군	44,864,000	44,864,000	91,250,000	91,250,000	농식품부-139('08.12.30)
	서산시	1,053,000	1,053,000	10,162,000	10,162,000	농식품부-139('08.12.30)
유지	보령시			1,000	1,000	농식품부-139('08.12.30)

※ 순천, 태안, 서산 등 3개 시·군은 2010년도 조정 추진예정

붙임8

자율관리 공동체 현황

연도별, 유형별 공동체 현황

구분	참여 공동체수(개소) * 연도별 : 누계기준						참여 어업인수(명)	
	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전체	공동체평균
'01	63	32	11	8	12	-	5,107	81.1
'05	308	159	46	52	43	8	24,805	80.5
'08	659	341	78	115	102	23	50,728	77.0
'09	758	391	80	135	124	28	56,100	74.0
'10.8	863 (100%)	438 (50.7%)	85 (9.8%)	156 (18.1%)	143 (16.6%)	41 (4.8%)	60,902	70.6

* 어촌계수('09) : 1,993개, * 광역공동체수('10.12) : 44개소

2010년 자율관리 등급별 현황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계	121	58	5	29	24	5
풍요	7	4	1	2	-	-
모범	114	54	4	27	24	5

* 대상공동체 758개소 : 풍요 7개소, 모범 114개소, 협동 538개소, 참여 99개소

2010년 자매결연 공동체 현황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4	2	-	2	-	10	-	8	6	16	6	12	2
우수	32	1	-	1	-	5	-	4	3	8	3	6	1
신규	32	1	-	1	-	5	-	4	3	8	3	6	1

* 공동체간 멘토&멘티 결성(우수-신규 각 32개소)

자율관리 졸업공동체 현황('10까지)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졸업	64	2	2	1	1	7	-	6	9	19	8	7	2

* 4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졸업(제외)

붙임9

투용자 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2010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1	'12	'13	'14	'15
총 계	계	183,269	1,027,574	180,955	208,698	213,356	212,966	211,599
	국 비	131,696	737,310	130,092	151,963	158,460	149,081	147,714
	지방비	37,123	222,208	37,727	43,005	41,166	50,155	50,155
	용자	11,875	55,811	10,687	11,281	11,281	11,281	11,281
	자담	2,579	12,245	2,449	2,449	2,449	2,449	2,449
①과학적 자원 조사·평가체 제 구축	소 계	1,800	37,350	1,800	2,630	10,270	12,380	10,270
	국 비	1,800	37,350	1,800	2,630	10,270	12,380	10,270
	지방비							
	용자							
	자담							
②수산자원회 복계획	소 계	124,875	715,061	125,200	151,637	147,907	145,159	145,159
	국 비	99,353	548,598	98,673	119,768	117,877	106,140	106,140
	지방비	25,504	166,464	26,527	31,869	30,030	39,019	39,019
	용자							
	자담							
③총허용어획 량(TAC)	소 계	13,610	68,961	12,422	13,264	14,012	14,260	15,003
	국 비	1,735	13,150	1,735	1,983	2,731	2,979	3,722
	지방비							
	용자	11,875	55,811	10,687	11,281	11,281	11,281	11,281
	자담							
④수산자원 서 식지 및 생 태환경 관리	소 계	17,214	83,711	17,035	16,669	16,669	16,669	16,669
	국 비	15,914	76,967	15,635	15,333	15,333	15,333	15,333
	지방비	1,304	6,744	1,400	1,336	1,336	1,336	1,336
	용자							
	자담							
⑤기타 수산자 원관리(자율 관리어업)	소 계	25,788	122,490	24,498	24,498	24,498	24,498	24,498
	국 비	12,894	61,245	12,249	12,249	12,249	12,249	12,249
	지방비	10,315	49,000	9,800	9,800	9,800	9,800	9,800
	용자							
	자담	1,304	12,245	2,449	2,449	2,449	2,449	2,449

* 과학적조사평가의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관리비는 제외